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479
----------	------

제안년월일 : 2018년 04월 1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신원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7호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8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2018. 4. 10)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촉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 나. 협의회 위원에 서울특별시의원을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협의회 개최를 “1회” 에서 “2회” 로 조정함 (안 제6조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한 10인”을 “2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8조 중 “2인”을 “2명”으로,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를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를 “협의”로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41조에 따라</u> ----- ----- -----.</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1. ~ 12. (생략)</p> <p><신설></p> <p>13. (생략)</p> <p><신설></p>	<p>제2조(기능)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u></p> <p>15. (현행 제13호와 같음)</p> <p>14. <u>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p>
<p>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공동의장 1인은 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인은 시장이 된다.</p> <p>③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p>	<p>제3조(구성) ① ----- 2 <u>명을 포함한 15명</u> ----- -----.</p> <p>② <u>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u></p> <p>③ <u>협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u></p>

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구성한다.

<신 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5조(회의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들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 위원들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2회 -----

제6조(안건의 부의) (생략)

제7조(의견청취) (생략)

제8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선정, 기타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관련부서의 담당 과장(담당관)과 교육협력관으로 한다.

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생략)

제7조(안건의 부의)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청취)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
----- 2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0조(실무협의회) ① ----- 협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 2
명-----

-----.

④ -----
----- 협의-----
-----.

제11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